전북지방우정청 공고 제 2024 - 74호

2024년도 제2회 전북지방우정청 우정9급(집배)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전북지방우정청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 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4년 6월 26일
전북지방우정청장

1 임용예정인원 (총 13명)

직급	직렬 및 직종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업무내용
우정서기보	우정직 (집배)	- 일 반 : 12명 - 장애인 : 1명	전북지방우정청 소속우체국 (구분 모집표 참조)	우편물 배달 및 수집업무

< 모집단위(우체국)별 선발인원 구분모집표 >

(단위 : 명)

구 분	전주	동전주	익산	정읍	남원	부안	순창	합 계
일 반	2	1	3	3	1	1	1	**12**
장 애	-	-	1	-	-	-	-	**1**
합 계	**2**	**1**	**4**	**3**	**1**	**1**	**1**	**13**

※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6항에 따라 **합격자는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4년 이내 우정사업본부의 타 기관(총괄국)으로 전보될 수 없습니다.**(**응시원서에 반드시 응시우체국을 기재**)

※ 하나의 모집구분 및 모집단위만 지원 가능 (복수·중복지원 불가)

2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및 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16조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및 제27조, 제29조, 제30조
- 균형인사지침 /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통합인사지침

3 응시 자격 및 요건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참고1" 참조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18세 이상(2006.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전라북도 거주자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24.8.5.) 기준]

자격요건	1. 제1종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소지한 자 2. 제2종 소형면허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소지자 ※ 자격 요건 1번 및 2번 모두 충족해야함

다. 우대요건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공 통】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 취득 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경력은 응시자격요건(운전면허)을 충족한 이후의 경력을 인정

【세부 사항】

관련분야 경력	ㅇ 우편물 배달, 수집 또는 소포(민간택배 포함) 업무 * 총 경력 1개월 이상에 대해 배점
無음주운전 경력	ㅇ 운전경력증명서 상 음주운전 경력이 없는 자 * 음주운전 경력을 확인(감점식)
자격증	ㅇ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 3급 이상

※ **(관련분야 정의) 우편물 배달, 수집 또는 소포(민간택배 포함)업무**

- 단, 아래 경력은 우정직(집배) 업무와 유사한 경력으로 50%만 적용된 환산경력으로 인정
  - 우체국소포원·특수지 집배원 경력 및 舊재택위탁배달원의 '20년 이전 경력

* 근거 :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기준

★ 소포업무 인정기준

① 소형의 ② 다양한 물품을 ③ 발송인(수탁자)과 택배업자가 일정한 계약(접수)을 통해 ④ 운송 등을 위해 포장을 하고 ⑤ 부착된 운송장(기표지)에 기재된 장소에서 ⑥ 다수의 수취인(수하인)에게 인도하는 행위

- 소포업무가 아닌 특정물품의 배송업무, 퀵서비스, 대형마트 주문 · 배송 또는 내근직종의 근무경력 불인정

※ 가점요건(적극적 서류전형에만 반영)

- 한국사검정능력시험 6급이상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것에 한하여 인정

※ 응시요건으로 인정한 자격증 이력은 우대요건이 아님

< 응시자격 요건 기본사항 >

○ '경력'은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의 경력을 의미

- 국내·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법인 등에서 근무한 경력을 의미하며, 개인사업자(사업주)나 개인사업자에 소속된 직원의 경력은 불인정
- 임용예정 직위 주요업무와 관련된 경력으로서 경력(재직)증명서가 제출되고 담당업무·근무기간·주당 근무시간(예_주00시간·직급(직위) 등이 정확히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
- 기관의 폐업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관련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예-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하여야 하며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는 필수제출
-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
- 경력기간은 주당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시간제 근무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라. 장애인 구분 모집 응시 대상자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 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 장애인은 일반분야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일반조건으로 응시가 가능하나 중복 접수(예시 : 일반분야와 장애인분야 모두 지원)는 할 수 없음
- 장애인 구분 모집 응시 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4 시험 방법

가. 제1차 시험 (서류전형)

- 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직위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초과일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관련분야 경력, 無 음주운전 경력, 자격증)
  -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인증서 보유 시 3% ~ 5% 가점 부여

□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가산점 – 적극적 서류전형에만 적용

○ 고급(1등급, 2등급) : 5점, 중급(3등급, 4등급) : 4점, 초급(5등급, 6등급) : 3점

*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등급별 차등배점

나. 제2차시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① 소통·공감, ② 헌신·열정, ③ 창의·혁신, ④ 윤리·책임
  - (평가방식) 개별면접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시험 일정

구분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	'24.6.26.(수) ~ 7.8.(월)	'24.7.4.(목) ~ 7.8.(월)	'24.7.29.(월)	'24.8.5.(월)	'24.8.13.(화)

- 본 시험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게시
- 면접안내 및 합격자 명단 등은 우정사업본부, 전북지방우정청, 나라일터 사이트 공고

6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시간 : 2024. 7. 4.(목) ~ 7. 8.(월),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및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제외]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 접수
  - 응시원서는 별지서식1의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메세지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
- 등기우편 접수 주소 : 전북지방우정청 인력계획과 (우54966)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99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반드시 익일특급 등기우편, 빠른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등기우편접수시 봉투 겉면에 「우정9급(집배) 경력경쟁채용 응시원서 재중」기재

나. 제출서류

구 분	서 류	비 고
공통사항 (필수 제출)	응시원서 1부	○ 별지서식 제1호
	이력서 1부	○ 별지서식 제2호
	자기소개서 1부	○ 별지서식 제3호
	직무수행계획서 1부	○ 별지서식 제4호
	운전경력증명서[1]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유효한 면허증 사본 제출
	주민등록초본[2]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별지서식 제5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별지서식 제6호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경력(재직) 증명서[3] 1부	○ 마감일 제출분에 한하여 인정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사본 1부	○ 적극적 서류전형에만 적용

1) 운전면허 경력에 보유하고 있는 면허 및 면허취득일자 모두 표시, 면허취득일 이후 운전경력(교통사고, 교통위반 등)이 전부 표시 되도록 조회된 증명서 제출

2) 발급시 '전체포함'으로 신청. 주소변동 이력 표시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발급, 남자의 경우 병적사항 기록되도록 발급 및 제출하고 미필자, 병역사항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 제출

3) 기관·회사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제출(발행기관의 증명이 있는 객관적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경력사실이 확인 가능하도록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 포함, 경력검증 시 미비할 경우 추가 서류 요청 가능

4)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사본,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누락(미비사항)이 있는 경우 서류전형에서 불합격될 수 있으며,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자격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 추가서류 제출사항**

✓ **필수1 : 4대 보험(고용보험 등) 중 1개 보험의 자격 득실 내역 1부**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확인서)

✓ **필수2 : 국세청이 발급한 소득금액 증명 1부**

※ 제출서류 안내 참고

다.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임용예정직무,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을 정확하게 확인 후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통(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개별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전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 제출시 주의 사항 >

· 근무기간(연월일까지 기재),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내용**, 발급기관(회사)명, **직인**, **발급담당자 전화번호** 등을 명시

· 경력(재직)증명서에 직무분야와 관련된 경력이 미기재 또는 모호할 경우, 발급부서 확인(서명) 또는 직무분야와 관련 경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사기록카드 등) 첨부

· 제출한 경력의 확인을 위해 필요 시 4대 보험 자격 득실 증명·확인 및 소득금액 증명(국세청 발급)을 제출받는 절차가 있음

·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하여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분야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 경력기간은 주당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시간제 근무 경력은 기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참고 **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 제출된 서류에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등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고의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변조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의거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 정지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법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

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가 되므로 응시원서 작성방법,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제출된 증빙서류(경력·자격증 등)는 관계기관에 진위를 확인할 예정이며, 허위사실 기재 또는 위·변조 시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의거 5년간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내에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한 경우 해당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4. 8. 13. ~ 8. 27.

7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 예정일 : 신규 집배원 교육 수료 이후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용기간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따른 정년 적용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함

8 안내 및 참고사항

-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또는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이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 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 토요일 휴무를 원칙으로 하나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예시) 화요일~토요일(5일) 근무, 월요일 휴무
- 응시자는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 자격증과 제2종 소형면허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소지자로서 실제로 자동이륜차를 운전하여 우편물배달이 가능한 자 이어야 합니다.

  ※ 일평균 500여통 이상(최번기 600통 이상)의 통상우편물과 2Kg 내외(최고 30Kg)의 다량의 소포를 자동이륜차에 적재한 후 직접 운전 배달하기 위한 체력 필요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타 문의 사항은 전북지방우정청 인력계획과(☎063-240-3742)로 문의 바랍니다.

참고 1 응시 결격사유 및 자격정지 등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제14925호)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2329호) 제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영구 임용결격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24.5.31.을 기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마1181(2022.11.24.), 2020헌마1605·2022헌마1276(병합)(2023.6.29.))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에서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정부입법으로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 중인바, 이에 따르면 동법 개정 이후 개정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임용될 수 없고, 임용되었더라도 개정법 시행일에 퇴직하게 됩니다. 정부입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따르면 동법 개정 이후 개정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임용될 수 없고, 임용되었더라도 개정법 시행일에 퇴직하게 됩니다. 정부입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참고 2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임용예정기관명	담당예정업무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전주우체국 등 총 7개 우체국	우편물 배달 및 수집	우정9급(집배)	총 13명

주요 업무	○ **우편물 배달 및 수집** - 우편 차량, 원동기장치 운전 - 관할 지역 우편물 구분·수집·배달 - 우편물 배달 및 수집 자료 전산 등록 및 처리 - 우편물 배달 및 수집 관련 부대업무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직무 역량)** 안전의식 실천능력, 성실한 업무처리능력, 팀워크 지향 의사소통능력, 고객(민원)응대능력
필요 지식	○ 차량 및 원동기장치 운행 관련 지식 ○ 사고예방 및 교통법규 관련 지식 ○ 집배관련 시스템, PDA 장치 사용을 위한 정보화 관련 지식 ○ 우편물 배달 및 수집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한 관련 지식
응시자격요건	**관련분야 : 우편물 배달·수집 또는 소포(민간택배 포함) 업무**
응시자격요건 – **자격증**	①~②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제1종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 소지한 자 ② 제2종 소형면허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소지자
우대요건	**관련분야 경력**: ㅇ 우편물 배달, 수집 또는 소포(민간택배 포함) 업무 **無음주운전 경력**: ㅇ 운전경력증명서상 음주운전 경력이 없는 자 * 음주운전 경력을 확인(감점식) **자격증**: ㅇ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 3급 이상
가산점	○ 한국사 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6급 이상 인증서 보유시 3~5점 부여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우대요건 및 가산점"은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참고 3 제출서류 안내

구 분	내 용
1. 응시원서 1부 **: 필수서류 (별지서식 제1호)**	ㅇ 홈페이지로 접수하는 경우 생략 가능
2. 이력서 1부 **: 필수서류 (별지서식 제2호)**	ㅇ 별지서식 제2호 작성 - 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가점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3. 자기소개서 1부 **: 필수서류 (별지서식 제3호)**	ㅇ A4 2매 이내로 작성
3. 직무수행계획서 1부 **: 필수서류 (별지서식 제4호)**	ㅇ A4 2매 이내로 작성
4. 운전경력증명서 **: 필수서류**	ㅇ 공고일 이후 경찰서에서 발행된 것에 한하며,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과 법규 위반 경력 조회기간을 반드시 전체로 발급 ※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서 출력하거나, 경찰서에서 발행 ※ 공고일 이전에 발행된 증명서인 경우 또는 조회기간이 전체가 아닌 경우에는 불인정 할 수 있음
5. 운전면허증 사본 **: 필수서류**	ㅇ 소지 면허가 전부 나와있는 유효한 면허증
6. 주민등록초본 **: 필수서류**	ㅇ 주소변동 이력 표시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발급 ㅇ 남자의 경우 병적사항 기록되도록 발급 ㅇ 미필자는 병적증명서 제출
7.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각 1부 **: 필수서류 (별지서식 제5~6호)**	ㅇ 자필 서명 필수
8. 경력(재직) 증명서 1부	ㅇ 해당자에 한함 ㅇ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 ㅇ 근무기간(연·월·일)·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ㅇ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9. 우대요건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ㅇ 해당자에 한함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성적으로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유효한 성적 중 기준 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함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플러사용금지)

참고 4 “공무원 채용시험 봄” 포스터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공직문화와 공무원 채용에 대한 궁금증들
지금 바로 공무원 채용시험 봄 에서 확인하세요!

전격 공개!

2024년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일정

구 분		원서제출	필기시험 (1차)	필기시험 (2차)	서류전형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공개경쟁 채용시험	5급공채(행정)	1. 25. ~ 29.	3. 2.	6.28. ~ 7.3.	-	10. 29. ~ 31.	11. 15.
	5급공채(기술)			7. 4. ~ 9.			
	외교관후보자 선발			6. 28 ~ 7. 3.		11. 1.	
	7급공채	5. 16. ~ 20.	7. 27.	10. 12.		12. 4. ~ 7.	12. 20.
	9급공채	1. 18. ~ 22.	3. 23.			5. 28. ~ 6. 2.	6. 21.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1. 30. ~ 2. 2.	3. 2.		4월 중	5. 9. ~ 10.	5. 24.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7. 22. ~ 26.	8. 31.		10월 말	11. 26. ~ 28.	12. 20.
민간경력자 5·7급 일괄채용시험		6. 3. ~ 11.	7. 27.		9월 중	11. 6. ~ 13.	12. 30.
중증장애인 경력채용시험		3. 26. ~ 4. 1.	-		4월 말	6. 20. ~ 21.	8. 14.

-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에 들어오셔서 “2024년도 시험일정 사전 알림 신청”을 선택하시면 원서제출기간 및 시험기일 1주일 전에 SMS 문자로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 채용예정직렬 및 선발인원, 응시자격요건, 시험과목, 시험방식 등의 자세한 시험정보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채용시험 봄은 2040 청춘(청春) 세대가 대한민국 정부, 공직문화, 공무원 채용을 제대로 들여다 볼 수 있는 창구이자 동기부여가 되는 희망찬 이야기를 선해 드리기 위한 공직 소통 채널 입니다.

참고 5 임신 · 출산 및 육아 친화적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인사제도 소개

행복한 출산·양육을 위한

공무원 인사제도 활용 가이드



인사혁신처

1. 임신·출산 환경 지원 ❶

[휴 직]

질병휴직

✓임신중독증 등 임신 관련 질환 및 불임·난임 치료를 위해 질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난임 치료를 위한 질병휴직 중 임신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임신이 확인된 경우에는 복직이 필요합니다. 다만 임신한 여성공무원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므로, 필요 시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여성공무원이 임신 시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Q. 육아휴직 중 출산을 하게 된 경우,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한가요?

A. 출근 의무가 없는 육아휴직 중에는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 출산 시, 인사부서에 복직신청을 하여 복직 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 가]

(임신 전) 난임치료시술휴가

✓여성공무원은 인공수정 시술 시 총 2일, 체외수정 시술 시 총 3~4일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성공무원은 정자 채취일 당일 하루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 시술별 특별휴가 일수>

대상	시술 종류	휴가일수
여성	인공수정 시술	2일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	3일
	난자를 채취하여 체외수정 시술	4일
남성	정자 채취	1일

(임신 후) 임신검진휴가

✓임신한 여성공무원은 임신검진을 위하여 임신기간 중 총 10일의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임신검진휴가는 반일 또는 하루 단위로 신청할 수 있고, 최초 신청 시 임신확인서 등 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임신·출산 환경 지원 ❷

[휴 가]

(임신 후) 모성보호시간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모성보호시간 사용에 특별한 제한요건이 있나요?

A.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하루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출근을 전제로 하는 또 다른 특별휴가인 육아시간과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산 전·후) 출산휴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다태아의 경우 120일)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때 출산 후 휴가기간이 45일(다태아 임신 시 60일) 이상이어야 하며, 휴가기간 배치는 의료기관 진단서상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출산 후)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가 출산 시,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부터 90일 이내 범위에서 1회에 한해 나누어 사용 가능합니다.

참고.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15일로 확대하고, 120일 이내 범위에서 2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하도록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이 진행 중입니다.('23년 하반기 시행 예정)

[인사관리]

임신 공무원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 허용

✓임신 중인 공무원의 모성보호를 위해 필요 시,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가 허용됩니다.

임신 공무원 장거리·장기간 출장 제한

✓기관장은 임신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임신 공무원이 신청 시, 장거리·장기간 출장이 가능합니다.

임신·출산 공무원 야간 및 휴일 근무명령 금지

✓기관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에게 야간(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시간)과 휴일(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습니다.

⇨ 다만, 해당 공무원의 신청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야간 및 휴일 근무명령이 가능합니다.

2. 임신·출산 물적 지원

[맞춤형 복지]

난임 시술비 지원

✓난임 시술이 필요한 경우, 맞춤형 복지점수 500점(50만원)을 지급합니다.

⇨ 「모자보건법」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한해 1회 지원합니다.

태아·산모 검진비 지원



✓임신·출산 시 검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점수 총 200점(20만원)을 지급합니다.

자녀 출산 축하금 지급

✓둘째 자녀 출산 시에는 2,000점(200만원),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시에는 3,000점(300만원)의 맞춤형 복지점수를 지급합니다.

⇨ 다태아 출산 시에는 출산 자녀 수만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지원 사업]

공무원 연금대출

✓질병휴직 또는 육아휴직 중이거나, 신혼부부 공무원 등은 사회정책적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연금대출에는 일반대출, 주택자금대출, 사회정책적대출 3종이 있으며, 사회정책적대출은 다른 대출 대비 1%p 낮은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Q. 사회정책적대출을 받기 위한 신혼부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대출 신청 시, 결혼 전 6개월 이내 또는 결혼 후 2년 이내이어야 합니다. 결혼 전 신청 시에는 예식장 계약서로, 결혼 후 신청 시에는 혼인관계증명서로 증빙하여야 합니다.

공무원 임대주택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신혼부부에게는 가점이 부여되며, 입주 중에 임신·출산할 경우 임대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Q. 공무원 임대주택 신혼부부 가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결혼 전 6개월 이내 또는 결혼 후 7년 이내이어야 합니다. 이때 혼인관계증명서로 증빙해야 하며, 예비신혼부부는 임대계약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하면 됩니다.

출산준비용품 지원사업

✓임신·출산 공무원에게 1자녀당 5만원 상당의 출산·육아용품을 지원합니다.

⇨ 공무원연금공단 연금복지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전용 온라인몰에서 원하는 용품을 선택·구매 가능합니다.

3. 육아 환경 지원

[휴 직]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자녀 1명당 최대 3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 사용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지?

A. 먼저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만8세 이하(만9세가 되기 하루전까지) 또는 국내학교 학제 기준 초등학교 2학년 이하(3학년이 시작되기 전날까지)이어야 합니다. 연장과 하년 갈기 중 하나만 종복되면 됩니다. 다음으로 자녀 1명당 최대 3년간 사용 가능하며, 기간 초과 여부는 공무원 신분으로 육아휴직 사용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가족돌봄휴직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휴직기간은 1년 이내 이며,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휴 가]

육아시간



✓만 5세 이하 자녀 돌봄을 위해 24개월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육아시간 24개월 산정방식은 ①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앞단위로 차감(최초사용한 기산일부터 다음달 기산일의 전일까지를 1개월로 봄)하고, ②연속하여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20일을 합하여 1개월로 차감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어린이집 휴업, 미성년 자녀 병원 진료 등으로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사관리]

육아 공무원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 허용

✓만 12개월 미만 자녀의 육아를 위해 필요 시,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가 허용됩니다.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

✓전일제 공무원은 육아를 위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일정 기간 전환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 시간선택제 전환 기간은 최소 3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전환 근무 지정기간이 만료되면 전일제 공무원으로 회복됩니다.

4. 육아 물적 지원

[각종 수당]

가족수당

✓자녀 양육 시, 첫째는 3만원, 둘째는 7만원, 셋째 이후 자녀는 11만원의 가족수당이 매월 지급됩니다.

⇨ 원칙적으로 자녀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다만, 만 19세 이상 성년 자녀라도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됩니다.

육아휴직수당



✓30일 이상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봉급액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됩니다.

⇨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당 1년입니다.

Q. 부부공무원이 둘일 자녀를 대상으로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 부부공무원 모두에게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됩니다. 다만, 부부 중 1인에게는 육아휴직 첫 3개월까지는 월봉급액 100%(250만원 상한)를 지급합니다.

재외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재외근무지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재외공무원에게는 자녀 학비보조수당이 지급됩니다.

[맞춤형 복지]

가족점수 부여

✓자녀 양육 시, 첫째 50점(5만원), 둘째 100점(10만원), 셋째 이후 자녀 200점(20만원)의 맞춤형 복지점수가 매년 부여됩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지원 사업]

공무원 연금대출

✓미취학자녀 육아, 3자녀 이상 양육,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 등은 사회정책적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미취학자녀 및 3자녀 이상 양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2023년 기준으로, 미취학자녀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를 의미하고, 3자녀 이상 양육은 '자녀가 3명 이상이고, 그 중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공무원 임대주택

✓6세 미만 영유아 자녀 2명 이상 혹은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 임대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선정 시, 미성년 자녀 양육 가정은 가점이 부여됩니다.

5. 청사 내 직장 어린이집

- 이용대상 : 만 0세에서 만 5세 취학 전의 각 각 정부청사 입주부처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무기계약직 자녀
- 이용시간 : 편일 07:30 ~ 19:30, 토요일 07:30 ~ 15:30

청사	어린이집	위치 등
세종	꿈샘	세종시 밀마루길 60(동 우정사업본부 근처) (044) 262-1676 http://sejongdreamkids.com
	라온	세종시 갈매로 381(정부세종청사 문화관 맞은편) (044) 866-2017 https://raonkids.kidsnote.ac
	빛들	세종시 도움5로 19, 8동(우정사업본부) 1~2층 (044) 863-1542 bitdul.co.kr
	쏠마야	세종시 도움8로 11-20 (044) 864-8123 http://www.solvita-child.co.kr
	아이세상	세종시 국세청로 8-14(국세청 인근) (044) 417-1501~2 http://www.isesangkid.com
	아이온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1(산업부) 1층 (044) 715-7007 http://aion.or.kr
	에그리나	세종시 갈매로 477, 4동(과기정통부) 1층 (044) 200-1571(044) 868-5040) http://www.sejongvegrina.co.kr
	홀고운	세종시 갈매로 408, 14동(문체부) 1~2층 (044) 998-3131 http://www.allgoun.co.kr
	윤빛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2(산업부) 1~2층 (044) 715-7005 http://www.yunbit.co.kr
	이든샘	세종시 다솜2로 94, 5동(농식품부) 1~2층 (044) 262-1676 http://cafe.daum.net/edensam
	차오름	세종시 다솜3로 15(제15주차장내, 문체부 인근) (044) 862-1934 http://cor-child.co.kr
서울	푸르미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02) 737-7327 http://www.purumicc.co.kr
	한빛	서울시 종로구 효자로 39(청와동) (02) 735-8817, 6400 http://hanbit.kidsnote.ac
과천	과천청사	경기도 과천시 홍촌길로 38(중앙동) (02) 504-3004~5 http://www.gckids.co.kr
	청초롬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1~2) (02) 3679-3774~5 http://www.pururi.com/crr
대전	다솜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북문 (042) 719-8082 http://www.dasomkids.co.kr
	새롬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북문 (042) 481-6422 http://www.saeromkids.com
	아람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북문 (042) 481-6441 http://www.tjkid.co.kr
대구	행복한	대구시 달서구 화암로 301, 입주사동 B1층 (053) 635-7911~2 http://www.happynursery.co.kr
인천	초롱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100, 1층 (032) 588-4536
광주	꽃초롬	광주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062) 975-5700 http://www.crkids.kr
강남	예다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10, 1층 (055) 981-6321 http://www.yedaumkids.com
제주	청사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064) 727-5570 http://cafe.daum.net/jejuchungsarang
고양	푸르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04번길 50, 1층 (031) 966-3396 http://purumigy.co.kr

청사 내 직장 어린이집 통합 사이트

어린이집 입소 및 대기순서 관리 등 종합 정보 제공

정부세종청사 직장 어린이집 사이트



정부대전청사 직장 어린이집 사이트



인사혁신처

* 관련 정보는 인사혁신처(https://www.mpm.go.kr) 홈페이지(새소식-간행물-"행복한 출산양육을 위한 공무원 인사제도 활용 가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 응시자가 제출서류 맨 앞에 합철하여 제출합니다.

임용예정 직급	응시번호	모집단위(지역)	성 명	응시자격(해당란 체크)
우정9급(집배)		(　　) 우체국		□ 제1종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 소지 □ 제2종 소형면허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소지

구　　분	필수 여부	제출 여부	비 고
1. 응시원서	필수서류	□	
2. 이력서	필수서류	□	
3. 자기소개서	필수서류	□	
4. 직무수행계획서	필수서류	□	
5. 운전경력증명서	필수서류	□	
6. 운전면허증	필수서류	□	
7. 주민등록초본	필수서류	□	
8.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필수서류	□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필수서류	□	
10. 경력(재직) 증명서	해당자 한	□	
11. 우대요건 관련 자격증	해당자 한	□	

* 제출서류 해당 항목에 대하여 √표시 후 제출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집게**를 사용하여 편철 제출**(스테이플러 사용금지)**

붙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작성자(응시자) :　　(서명)

<별지서식 제1호>

응 시 원 서 (원본)

전북지방우정청장 귀하

본인은 전북지방우정청 주관 우정9급(집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응 시 원 서(원본)				
응시직급 및 분야				
응시관서(지역)				
※응시번호	※ 담당자 기재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우)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란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응시직급 및 분야			
응시관서(지역)			
※응시번호	※ 담당자 기재	성 명	(한글) (한자)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접수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전에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응시원서』는 아래의《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우정9급(집배)

3. 채용예정관서 : 본인이 응시하고자 하는 우체국을 기재

4.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5. 성명 · 생년월일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6.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전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만 가능합니다.

7. 정부수입인지 : 가까운 우체국에서 아래 해당 금액의 인지를 구입하여 붙이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전자수입인지 가능)
   - 9급 : 5천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8. 제출서류는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운전경력증명서,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경력증명서, 자격증,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순으로 편철하여 제출
   (모든 서류는 금회 시행하는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표시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등은 집배원 채용안내 홈페이지, 전북지방우정청 홈페이지/채용공고란에 게시합니다.

<별지서식 제2호>

이 력 서

1. 공통사항

응시 번호	※ 담당자 기재	응시 분야	일반 또는 장애	응시 지역		성명	

2. 응시자격

운전면허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3. 우대요건

경력	근무기관 (부서)	근무기간	직 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 형태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4. 가산점

※ 해당 없을시 삭제

한국사	시험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시행기관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성 명 : (인)

※ 본인이 직접 자필 또는 워드 작성 가능하며 작성자는 자필로 이름과 서명 기재함
※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 부주의로 잘못 기재되거나 표기되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력서 작성요령

『이력서』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통사항 】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② 응시분야 : 일반 또는 장애인 구분 선택
③ 응시지역 : 응시하고자하는 지역 작성

【 응시자격 】 : 해당사항에 한하여 작성

면허증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만 기재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경력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만 기재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근무형태)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 • 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경력기간중 휴직기간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직기간 및 사유를 별도 기재
-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을 나누어 기재
- 근무형태는 **'전임'(통상근무자) 또는 '비전임'(단시간근무자)으로 표시하되, 비전임일 경우 주당 근무시간 표시,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 예) 통상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인 회사에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한 경우 : 2년 인정

【 우대요건 】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경력 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경력 외 별도경력을 기재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 • 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경력과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자격증 응시자격요건을 제외한 관련분야 자격증만 작성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하며, 자격증 명·취득(예정)일·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자격증 명·취득(예정)일·검정기관은 자격증 취득 증빙 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우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분야와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작성 불필요

<별지서식 제3호>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응시직급 및 분야	우정9급(집배)

◎ 자기소개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지원동기 및 귀하가 현재까지 달성한 업적과 장점 등을 사례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 최근에 발생한 사건부터 기술하도록 하되, 필요시 별지 사용 가능
- 분량은 A4용지 3매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하단의 작성일자, 작성자 성명 및 서명 반드시 기재

2024 . . . **작성자 :** **(인/서명)**

<별지서식 제4호>

직무수행 계획서

성 명		응시직급 및 분야	우정9급(집배)

◎ 직무수행계획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 **응모직위에 대한 직무수행계획서(A4 2매 이내 작성)**

1. 본인이 해당직위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이유
2. 해당 직위와 관련이 있는 경력 및 연구실적
3. 해당 직위의 업무추진 전략 및 수단 등

※ 14포인트, 휴먼명조(각 항목별 번호는 진하게, 기타 내용은 보통)

※ 하단의 작성일자, 작성자 성명 및 서명 반드시 기재

2024 . . . 작성자 : (인/서명)

<별지서식 제5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경력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경력, 자격증, 어학능력, 수상실적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응시생 제출 자료 발급 기관
(2) 제공목적 : 제출자료 진위 확인
(3) 제공하는 항목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 자료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4년 월 일

성명 : (서명)

전북지방우정청장 귀하

<별지서식 제6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에 따른 학력·경력·자격증, 수상실적,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등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주민등록번호	「공무원임용시험령」제34조 제5항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4)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복수국적자, 경력사항,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 등에 대한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공무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공무원 채용 관리	**학위, 경력사항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5. 시험 부정행위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인사혁신처
(2) 제공목적 :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3) 제공하는 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처분 있은 날로부터 5년 (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4년 월 일

성명 : (서명)

전북지방우정청 귀하

<별지서식 제7호>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4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북지방우정청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